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14일, 전종덕의원 대표발의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5.12.1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전종덕 의원)

현행법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양식산업 발

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와 양식산업의 현황 및 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는 양식생물의 새로운 질병 및 대량 폐사를 야기하는 등 양식산업 발전에 커다란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기본계획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4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성완)

□ 현행 「양식산업발전법」 제6조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양식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같은 조 제2항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양식산업의 현황 및 전망, 양식산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등 9개 호의 항목을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법과 개정안에 따른 기본계획 항목 비교]

현행법상 기본계획 포함항목	개정안으로 추가되는 항목
1.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양식산업의 현황 및 전망 3. 양식산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양식인력 육성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5. 양식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6. 양식수산물 소비 촉진 및 수출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양식단지 조성 등 양식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양식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행 포함항목과 같음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수온, 적조 등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하여 해양환경변화에 민감한 양식 수산물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양식업 생산량은 2000년 이후 지속 증가하여 어업생산량 감소를 보전하였으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2019년 이후 감소 추세[1]이며, 수온상승으로 인하여 양식적지가 축소되고 있고 기존 양식장의 폐사율이 높아지는 등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1) '00년 65만톤, '10년 136만톤, '15년 167만톤, '19년 240만톤, '20년 231만톤, '23년 227만톤

또한, 24년의 경우 고수온 특보 발령일수가 71일로 2020년의 3배이고,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업 피해액도 특보도입(2017년) 이후 평균 피해액의 4배로 조사[2]되고 있음.

□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업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기후변화가 양식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및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여 5년 단위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하여 양식 적지 변화에 대한 대응 등 필요한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 2024년 9월 발표된 「제5차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2024~2028)」에 양식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단기 대응, 중단기 적응 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3] 개정안은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명시적으로 기본계획의 항목으로 포함하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개정안 부칙(안 제2조)은 적용례를 두어 개정규정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현재 계획이 수립되어 적용(계획기간 2028년까지 적용)되고 있는

2) 24년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업 피해액은 약 1,159억원으로 특보도입 이후 평균 피해액의 4배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출처 : 해양수산부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 계획')

3) 기본계획 중 양식산업 기후변화 대응 전략에 대한 내용은 [참고자료 1] 참조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되나, 다음 계획의 수립주기가 2029년으로 상당한 기간 남아 있어 개정내용의 적용이 지연되는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4].

□ 관계 부처 의견으로,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본계획에 기후변화의 영향 및 대응방안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경태)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

4) 참고로 입법례를 살펴보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부칙<법률 제19017호, 2022.10.18.>과 같이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부칙에 법률 시행 이후에 일정 기간내에 개정사항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의 사례가 있음.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법률 제19017호, 2022.10.18.>

부칙 제2조(기본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대안반영폐기